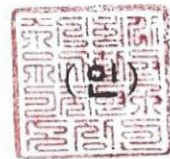


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| | | | |
|-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|
| 소속 | 주식회사 유나환경기술연구소 (노동부 제 2015 - 120002 호) | | |
| 구분 | 성명 | 자격 종목.등급 | 자격증 번호.조사자교육 수료 |
| 측정자 | 강길수 | 대기환경기사 석면조사자교육 | 78261703413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(2011.08.25) |
| 분석자 | 정경수 | 화학공학전공 |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(2013.07.25) |

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로 8번길 19 (상도동)
 사업자등록번호 190-81-00054
 대표전화 054) 278-2223
 팩 스 054) 278-2224
 E-mail hsk0801@naver.com

주식회사 유나환경기술연구소장



<작업 중>

1. 석면비산 측정 결과

| 2017.07.26 | 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측정지점 | 시료번호 | 유량(l/min) | | 시간(분) | 측정 결과(f/cc) | 검출석면 |
| | | 분당 | 총(L) | | | |
| 부지경계선 | P1 | 10.05 | 2,412 | 240 | 0.000 | 기준미만 |
| 부지경계선 | P2 | 10.07 | 2,416 | 240 | 0.000 | 기준미만 |
| 부지경계선 | P3 | 10.11 | 2,426 | 240 | 0.000 | 기준미만 |
| 부지경계선 | P4 | 10.13 | 2,431 | 240 | 0.000 | 기준미만 |
| 위생설비 | P5 | 10.08 | 403 | 40 | 0.000 | 기준미만 |
| 음압기 | P6 | 10.14 | 405 | 40 | 0.002 | 기준미만 |
| 폐기물반출구 | P7 | 10.11 | 404 | 40 | 0.002 | 기준미만 |
| 작업장주변(실내) | P8 | 10.09 | 1,210 | 120 | 0.000 | 기준미만 |

2. 석면비산 측정 지점 위치

<상대초등학교>



3. 석면비산 측정 현장사진

| 측정지점 | P1 (부지경계선) | P2 (부지경계선) | P3(부지경계선) | P4(부지경계선) |
|------|---|---|--|---|
| 측정사진 |  |  |  |  |
| 측정지점 | P5 (위생설비) | P6 (음압기) | P7(폐기물반출구) | P8(작업장주변, 실내) |
| 측정사진 |  |  |  |  |

< 작업 중 >


1. 석면비산 측정 결과

| 2017.07.27 | 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측정지점 | 시료번호 | 유량(l/min) | | 시간(분) | 측정 결과(f/cc) | 검출석면 |
| | | 분당 | 총(L) | | | |
| 폐기물반출구(상차) | P1 | 10.08 | 403 | 40 | 0.001 | 기준미만 |

2. 석면비산 측정 지점 위치



3. 석면비산 측정 현장사진

| | | | | |
|------|---|--|--|--|
| 측정지점 | P1 (폐기물반출구,상차) | | | |
| 측정사진 |  | | | |

<개별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| 구분 | 지점 | 지점 수 | 시료측정위치 | 비고 |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작업중 | 부지경계선 | 4개 이상 | 부지경계선 높이 1.2~1.5m | - | |
| | 위생설비 입구 | 전수 (1개 이상) | 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~1.5m 거리 1m 이내 | - | |
| | 작업장 주변 | 실내 | 1개 이상 | 작업장 주변 높이 1.2~1.5m | -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|
| | | 실외 | 1개 이상 |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~1.5m | -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 |
| | 음압기 | 전수 (1개 이상) | 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~1m이내 | -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| |
| | 폐기물 반출구 | 전수 (1개 이상) |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~1.5m | - | |

*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, 해체·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함.

4. 고찰 및 결론

- 4.1 이 조사는 『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』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'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'에 따라 실시하였다.
- 4.2 법정시료 개수에 부합하는 시료를 채취 하여 분석한 결과 공기 중 석면 농도는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 되었다.
- 4.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 제2항에 따라 공기 중 석면농도의 분석은 위상차현미경으로 계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, 분석방법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『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』에 따랐다.
- 4.4 분석결과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표기하였다.
- 4.5 본 조사결과는 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